

결 정

2018 - 2009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
2.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

주 문

경향신문 2017년 12월 8일자 22면 「SRT 개통 1주년...연 2000만 달성 초읽기」 제목의 특집면, 국민일보 12월 24일자 24면 「재테크」 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각각 SRT 개통 1주년, 금융사들의 재테크 관련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‘advertorial page’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.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‘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나 표현’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

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3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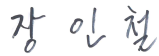


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

위 원 정 승 호 정승호

장 명 국 장명국

이 동 현 
장 인 철 
강 희 
김 영 모 
박 현 갑 
박 미 경 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3)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